	보도자료					•생산적 금융	
금융위원회	보도	2019.1.29.(화) 조건	<u>'</u>	배포	2019.1.28.(월)	• 신뢰받는 금융	
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		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54)			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(02-2100-2860)				김 종 식 사무관 (02-2100-2865)		
책 임 자	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제 호(02-2100-2610) 담 당 자		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4)			
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 주 영(02-2100-2510)		김 기 태 사무관 (02-2100-2523)				
		용위 전자금융과장 용 민(02-2100-2970)			금 종 익 서기관 (02-2100-2811)		

제 목 :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

- ◆ 설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
 - 중소기업·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·보증 확대
 - ②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**불편이 없도록 사전** 조치하고,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
 - ❸ 금융사고·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·점검

1.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.

- ① (중소기업)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(12조 5,000억 원)보다 **2,000억 원** 중가한 총 12조 7,200억 원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
- 국책은행(산업은행·기업은행)을 통해 9조 3,500억 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
- 운전자금,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,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(최대 0.5→0.7%p)

-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**운전자금·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** 설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중
 - * 지원기간 : 2019. 1. 4. ~ 2. 20. (명절 전 30일 ~ 명절 후 15일)

< 산업은행·기업은행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>

신	규	만기	연장	합계		
기업은행	산업은행	기업은행	산업은행			
3조 원	9000억 원	5조 원	4500억 원	9조 3500억 원		
3조 9000억 원		5조 450	00억 원			

-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,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3700억 원*의 보증을 공급
 - * (신규보증) 6700억 원 + (만기연장) 2조 7000억 원
- 중소기업의 특성*에 따라 보증료,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
 - * (예) 수출중소기업: 보증료 0.2~0.3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 창업중소기업: 보증료 최대 0.7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

[2] **(소상공인)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 원**을 지원

-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**서민금융진흥원은**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
 - * 전통시장 지원 실적 : 2008년~2018년, 3,902억 원

<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>

ㅇ 지원대상 :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

ㅇ 지원금액 : 상인회당 2억 원 이내(점포 당 1,000만 원, 무등록점포 500만 원)

o 대출기간: 6개월(2018. 12. 31. ~ 2019. 5. 31.)

ㅇ 금리 : 4.5% 이내(평균 3.1%) /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

-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2018. 12. 3.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, 2019. 2. 1.까지 지원 예정
 - * 지원방식 : 서민금융진흥원 → 우수시장 상인회 → 개별 상인
- ※ [참고] 작년 추석연휴부터 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를 단축 (카드사용일로부터 3→2영업일)하여 소상공인에게 대금 조기 지급중

2. 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- ① (대출·연금) 대출 만기연장, 연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금융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
 - ※ <u>대출·연금·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「민법」에 따라 만기·지급일이</u> <u>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(2월 7일)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</u>
- **대출 만기**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**대출 조기상환** 또는 **만기 연장**이 가능하도록 조치
 -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월 1일에 '조기상환수수료 없이' 조기상환 허용
 - * 다만,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
 -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
- **퇴직연금**, **주택연금** 등의 **지급일**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**직전 영업일**(2월 1일)에 **우선 지급**
 -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
 -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
- ② (정보 제공) 연휴 중 영업 점포(이동·탄력점포)에 대해 안내하고,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
- (영업 점포) 각 은행의 이동·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
 - * (**탄력점포**) 주요 역사, 공항,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 연휴 중에도 점포를 운영하여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
 - ** (**이동점포**) 설연휴 기차역·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 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

- (유의사항 안내) 금융회사가 휴무내용,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
- 특히,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(카카오은행)은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

< 참고 :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>

- ▶ (카카오은행)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'19.2.1.(금) 16:00 ~ 2.7.(목) 09:30에 해외계좌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
 - * 다만, '웨스턴유니온(WU)빠른해외송금'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
 - ⇒ 전체 고객 대상 **공지사항을 게재**하고 연휴기간 중 **해외자동송금** 실행 (예정) 고객에 대한 **개별 안내**를 통해 **중단사실을 공지**

3.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□ (사이버 금융 보안) 사이버공격*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 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적기대응
 - * 보이스피싱 악성 앱, 자동입출금기(ATM) 해킹 등
 -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-금융보안원-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·전파체계 유지
- □ (내부통제 점검)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·보완*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
 - * 예 : 영업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·비상벨 작동상태 점검, 현금 등 보관·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,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
 - 인터넷 뱅킹, 카드·모바일 결제 관련 **전산시스템 가동상황**을 점검하고 **전산시스템 장애 발생**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**상황별 조치계획**을 세밀히 수립·시행



금융 거래 유의사항 주요 Q&A

- 1.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?
- □ 2.2~2.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(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카드 등)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.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, 2.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됨
- □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,
 - 사전에 **금융회사 조율**을 거쳐 **조기상환도 가능** (예: 2.1일 상환)
 - 2. 2.2~2.6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?
- □ 2.2~2.6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2.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, 2.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
 - 3. 2.2~2.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?
- □ 2.2~2.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.7일에 **설 연휴간 이자** 분까지 **포함**하여 **찾을 수 있음**
- □ 또한,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(2.1일)에도 찾을 수 있으므로, 은행 영업점에 문의 요망

4	. 자동납부일이 2.2~2.6일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지?
	2.2~2.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[*] 건은 다음 영업일인 2.7일에 출금 처리됨
	* 요금청구기관이 물품·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(예: 보험료, 휴대폰 요금)
	다만,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
5	. 2.2~2.6일 중 어음, 수표,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?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?
	어음·수표·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 되므로 2.1~2.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·수표·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.7일 이후 가능
	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(종이)어음, 당좌수표의 발행·배서는 가능하나,
0	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,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
6	. 2.2~2.6일 중 부동산거래,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	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,
Ò	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 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
	2.2~2.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·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·거래 역시 미리 송금(거래)익을 조정한 필요

7. 2.2~2.6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
2.2일 전	선 퇴직연	[금 수령을	희망하는	는 고객은	운용상품	종류별.	로 지급
일정에	차이가	있으므로	사전에	금융회사여	게 문의하	거나 토	직연금
약관 등	을 통해	지급일정	을 사전어	화인 할 3	필요		

- *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~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.29일 신청시 2.1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** 특히,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등의 경우 통상 지급 7영업일 전 지급신청이 필요한 바 금융회사에 사전에 문의·협의 요망

8. 주택연금 윌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- □ **주택연금 지급일이 2.2~2.6일 연휴 중**에 속한 고객의 경우 **2.1일에**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
 -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.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*을 신청하면 2.1일 찾으실 수 있음
 - *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

9. 2.2~2.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,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?

□ 2.2~2.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·DLS는 상환금액을 **2.7일에 지급**받을 수 있음

10. ATM, 인터넷 뱅킹,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,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?

- □ 자동화기기(CD/ATM) 인출한도, 인터넷뱅킹·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·고객별로 상이함
 - 따라서,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·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**해당 금융회사에 문의**하여 **이용한도 확인**이 필요
 - 또한, **인출·이체한도 증액**을 위해서는 **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** 필요

〈참고〉관련 법령상 최대 인출ㆍ이체 한도

구	분	1회 이체한도	1일 이체한도	
현금카드	인출한도	100만원	600만원	
₩ ± 1/1 = 1	이체한도	600만원	3,000만원	
1 1 1	개인	5,000만원	2.5억원	
텔레뱅킹	법인	1억원	5억원	
인터넷뱅킹	개인	1억원	5억원	
인디렛병성	법인	10억원	50억원	
모바일뱅킹		1억원	5억원	
메일	뱅킹	1,000만원	5,000만원	

[※] 다만, 법령상 인출·이체한도와 달리 금융회사가 **자체 회사별 한도**를 **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**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

11. 2.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,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?

- □ 2.2~2.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.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
 - ① (사례1)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, 1.31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.4일이 아니라 2.7일로 순연
 - ② (사례2)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, 금, 배출권의 경우 2.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2.1일 당일 수령
 - ③ (사례3)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, 2.1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.4일이 아니라 2.7일로 순연

12.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?

- □ 기업은행에서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할 예정
 - 2.1~2.2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

13.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2.2~2.6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?

- □ 신보는 2.2~2.6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**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**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
 - ① (신규보증)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, 그 밖의 기업은 2.7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
 - ② (기한도래) 개별 영업점이 2.4~2.6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2.7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조치

14.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?

- □ 1.4일부터 기업은행,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**특별자금 상담**이 가능
 - * 지원기간: 2019. 1. 4. ~ 2. 20.
 - (기은) 원자재 대금결제,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**운전자금 용도**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지원하고,
 - 만기연장이 아닌 **신규 결제성 자금대출**의 경우, 0.3%p 범위 내에서 **금리인하 혜택을 제공**할 계획
 - (산은)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.7%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

15.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?

- □ 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**자금공급을** 집중하고,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
 -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**보증료, 보증비율 등을** 차등하여 우대 지원 받을 수 있음
 - * (예) 수출중소기업: 보증료 0.2~0.3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 창업중소기업: 보증료 최대 0.7%p 인하, 보증비율 90~100%